#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64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신장식·차규근·김준형

김재원・조 국・강경숙

김선민 · 황운하 · 이해민

서왕진 · 정춘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서 작성 시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과정에

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 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함(안 제11 조제1항, 제12조, 제13조).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3항 등).
-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9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12조제1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3명과"를 "2명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 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를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소수의견의 요지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를"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후단 중 "연장할"을 "한 차례만 연장할"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9조제6항"을 각각 "제59조 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제59조제6항"을 "제59조제7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1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5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	①
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	
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	
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	
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u>국무총</u>	<u>대통령</u>
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제12조(기능)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	<u>&lt;</u> 삭 제>
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의 위원(부위원장 <u>3명과</u> 상임	<u>2명과</u>
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	
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 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 한다. <u>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u>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 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⑤ (생 략)

-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u>자</u>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자</u>
  - 3. (생략)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u>자</u>

<신 설>

<신 설>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u>사람은</u> .
1 <u>사람</u>
2
<u>사람</u>
3. (현행과 같음)
4
사람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
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② (생략)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략)

- 등) ① ② (생 략)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 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 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 나 이를-----

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 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 고,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소수의견의 요지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직접 조사하거

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유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
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
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디	∤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	기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	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④·⑤ (생 략) <u><신 설></u>

## ⑥ (생략)

① 관할 수사기관은 <u>제6항에</u>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같다.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u>,</u>
·
1.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접
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
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① (현행 제6항과 같음)
<u> </u>
·
(9)
<u>~</u> 

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⑨ (생략)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 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 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 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 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 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 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 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 <del>-</del>	하 차려	<b>네</b> 만 연장
할	_	<u> </u>	
<del></del>		n) コトウ	`
<u>⑩</u> (현행 )C1 구 (기)			
]61조(재정			
59조제7학	<u> </u>		
	· — — — — —		
<b>-</b>	<b>-</b>		<b></b>
② (현행	과 같음	)	
(3)			

에	띠	른	검사	의	통보	가	없	는
경우	우어	는	다음	각	호에	서	정	한
날이	ᅦ	ユ	통보	가	있는	것	<u></u>	로
본대	7.							
1. (	(생	릭	<b>F</b> )					
2.	위·	워회	가 ㅋ	1159	조제6	항。	1]	따

- 2. 위원회가 <u>제59조제6항</u>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 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 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 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1. (현행과 같음) 2 <u>제59조제7항</u>
같음) ③
 1제42조(제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 연시킨 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u>5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u> <u> 우를 포함한다)-----</u>

- 2. (생략)
- ④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